

眞正한 丁茶山 研究의 길 (七)

(아울러 茶山論에 나타난 俗學的 見解를 批判함)

天台山人

그러하야

- 1, 一同의 地에 枉濬가 잇는 때
- 2, 一成의 地에 枉濬이 잇는 때
- 3, 一同의 地에 半分은 山根이 잇는 때
- 4, 一成의 地에 半分은 山根이 잇는 때
- 5, 一井의 地에 折半은 山根이 잇는 때
- 6, 一畝의 地에 折半은 山根이 잇는 때

라도 正「井」字形으로 區分하기 어려운 때에는 田形을 正方形, 正三角形 等으로 田界을 直線으로 하여 面積同一하게 計算하면 그만이라는 圖說을 보여 주었다. 그러면 井田 區分에 地勢의 不便으로 因한 困難은 解除될 것이다. 하나 「民數無恒」--人口數가 一定한 대로 잇지 않는 데 對한 困難은 어이할 것인가? 여기에 그는 從來의 均制의 口分田에서처럼 土地 分配의 單位를 「民數」--口數에 두지 아니하고 「夫婦二人으로 된 餘夫」로써 單位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一夫婦(餘夫)에 二十五畝씩을 納호아 주고 四餘夫를 一夫라 하여 百畝田을 耕作케 되고, 三十六餘夫가 一井을 賡게 되여 所謂 九夫一井은 이로써 「通」, 「成」, 「終」, 「同」도 되고, 이로써 賦斂도 하고 이로써 軍旅도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야 「九州之內에 하로도 죽는 사람이 萬數, 出生하는 사람이 萬數, 乳瘍, 夭折, 餓死, 繁殖의 比率이 날마다 달오고 달마다 틀리나니」 口分田制의 不可能한 점도 여기 잇는 것이라. 그 單位는 餘夫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얏다(井田論三). 餘夫로서 分田의 單位를 삼는다 하드래도 天下의 餘夫에게 全部 다 授田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社會生活은 만다시 分業的이어야 하는 것과 農業에 干與치 않는 사람이 土地를 가질 수 업다는 理論을 主로 하되

「民者 胥資以生者也라. 飯雖貴나 悉天下之民而歸於田이면 亦困而死而已矣라. 工不攻金攻木攻陶瓦塼埴하야 以出其器用則有死已矣요, 商不通貨財, 遷有無하야 以濟其匱乏則有死而已矣요, 虞不作山澤之牧하며 牧不蕃食鳥獸하며 嬪不治絲麻葛臬하야 以資其衣服則有死而已矣니 若是者不可以爲農이요, 不可以爲農則不可以授田이라…冢宰以九職으로 任萬民할세 唯其可農者를 任之以農故로 九職에 農居一焉이니, 盡天下之民而計口分田이 有是理乎라.」(井田論三) 하얏다. 그는 또

「天子諸侯之有是田而 頒之於農夫也에……必擇其健壯勤嗇의 有婦子傭奴可助其功者授之라.」하야 耕作 능력 있는 사람에 授田을 限할 것이라 하얏다. 設令 官吏들에게 土地를 授與한다 하여도 農民과 가티 所有權을 주어 九分之一의 公田稅을 同一하게 바더야 한다. 이 點은 從來의 功臣田, 職田 등 例外를 撤廢하게 된다.

要컨대 授田 資格 있는 對象은

1, 男子二〇歲 - 六〇세, 女子二〇 - 五〇까지 壯僱으로 된 夫婦 卽 餘夫를 單位로 함.

2, 受는 田 耕作 能力 있는 夫婦에 限함 □寡孤□, □□□疾로 因하야 勞勤 能力 업는 자에게는 授田을 不許함.

3, 受田은 農業者에 限함

等이다. 그리하야 茶山은 受田者의 年齡, 授田範圍 制限, 分業의 發展으로 써 이 制度를 恒久코저 한 것이다.

그런데 茶山의 土地分配論은 그것이 土地를 井田制로 分配할 뿐 아니라 어 디까지든지 井田 속에 사는 百姓들의 共同耕作, 共同賦役, 共同賦稅 等 相互扶助를 提言한데 그의 □利한 眼光을 보여주는 바가 있다.

與所謂九夫一井者 總以計之에 爲通爲成爲終爲同하야 以之出賦斂하고 以之起軍旅라(井田論三)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니, 「制其村里에 東之以田이라. 凡以四井爲村, 四村爲里, 四里爲坊, 四坊爲部하고, 村置一監, 里置一尹, 坊置一老, 部置一正하고, 導之以仁義하야 以治公田하고 申之以孝悌하야 以治私田이라.」라고 하고, 「村監調役, 亦惟一夫是索이라. 名之曰佃首라 하야 自於其畝內에 調丁以應役이라.」하야 佃首를 두고 公田의 共同耕作과 共同賦役에 應하는 次第를 말하얏다(井田論二).

그리고 茶山의 井田法에 負擔된 人民의 義務로서는

1, 公田의 九一稅

2, 軍役의 負擔

이 있다. 「農夫爲兵이라야 其兵이 强」이라 하야, 農夫로써 師旅를 組織하되

八夫를 隊伍, 四井을 邱, 四邱를 里, 一里百廿八人으로 十四隊를 編成하여 嚴
□에 集합시켜 軍事を 敎鍊케 한 것이니, 어디까지든지 井田을 中心으로 한
것이다. 또 九一稅에 잇서서도 土地의 水旱肥瘠과 田主의 個戶의 軍人如何와
土地의 西南, 畿內, 三南 等 位置에 依하여 輕重이 잇는 것이다. 水田은 原則
的으로 九一, 里田은 什一(旱田도 人蔘, 果瓜, 野菜田 等은 九一), 軍田은 什
一稅・三十一稅, □田은 植民政策上 廿九之一, 三十九之一, 三十之一의 輕稅,
宮房田・錄田은 九一, 遂田은 什一稅를 徵收하는 것이다.